

서울지방법 중앙 검찰청	사건과장	2006. 7. 21. 수리	주임검사	부장검사	차장검사	검사장
	형제	79341 호	신성식		전	결
		고소장				

고소인: 공재협 대표 김명호(010-5590-8913)외 2인 윤병만, 이춘길  
 본적: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5-23  
 주소: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

피고소인: 1. 이용훈(대법원장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, 137-750  
 2. 이광범(사법정책실장),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, 137-750

제목: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대한, 공개질의서 답변 관련,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그의 행사 등

###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

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하여, 헌법이 보장하는 고소인의 행복추구권리(헌법 제 10조), 알권리(헌법 제 21조) 및 학문 자유권리(헌법 제 22조)가 침해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### 고소 사유 및 사실

고소인들은, '재임용은 학교자유재량행위'라고 해석한, 대법원 판례(1987. 6. 9.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부당하게

告訴人	김명호 외 2
被告訴人	이용훈 외 1 (대법원장)
罪名	직권남용
犯罪	고소인들의 재임용 탈락사유에 대한 공개질의에 있어서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 질의서 내용을 변조하여 교부함
概要	
備考	

고, '재임용 탈락은 교수지위상실이요, 최초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(1977. 9. 경한 것입니다.

1 7조 제 1항의 3항은, 전원합의체를  
 대법원도 대법원 판례(2000. 5. 18.  
 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

)년간 위 불법판례 86다카2622만을  
 겹칩니다.



이 서류는 작성명의인 김명호(이)가  
 (주민등록번호: 570217-1066930)  
 제출한 것으로 원본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 
 2006. 7. 21.  
 검찰주사(보) 박인정